

세월호 관련 사고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 내 문

《 주 의 사 항 》

현재 국세·지방세·관세 체납, 은행권 등의 채무불이행,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된 사업주와 기존 대출 대환 등 정책자금 운용목적에 위배되는 용자 및 보증은 지원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.

- ①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그 가족 중 중소기업·소상공인 용자지원
- ② 세월호 선적 차량·화물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용자지원
- ③ 생계형 화물차량 피해사업자 용자지원



1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·소상공인 용자지원

- **(지원목적)**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·영업중단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용자·보증 지원
- **(신청기간)** 2014. 5. 19(월) ~ 2014. 8. 19(화)
 - ※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
- **(신청장소)**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
- **(신청대상)**
 -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*으로서
 - ※ 피해자 가족의 범위 : 주민등록상 동일세대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, 삼촌, 이모, 고모 등
 -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·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
- **(지원내용)**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/3 규모 용자 지원

구 분	세 부 용 자 · 보 증 지 원 조 건
자 금	업체당 7천만원 이내, 금리 0.0%(무이자), 2년 거치 3년 상환
보 증	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, 수수료 0.1%)

□ **(구비서류)** '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'와 아래 부속 서류

- ① **가족관계 입증서류** :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
- ② **매출액 입증서류** : 국세청 발급 2013년도 「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」 또는 기장대리 세무사가 확인해 준 2013년 재무제표 확인서 등
 - ※ 창업 1년 미만의 경우, 월평균 매출액에 12월을 곱하여 연매출 산정
- ③ **휴업, 영업중단 확인** 서류 : 사실 확인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면 통·반장, 이웃상인 등 2인 이상의 인우보증

□ **(지원절차)**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을 발급
-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을 지참하여
 - (중소기업)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·용자 지원
 - (소상공인) 보증기관 또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용자 지원
 - * 담보가 없는 경우,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

□ **(문의처)**

- 중소기업청 : 비상안전담당관실 ☎ 042-481-6871
- 지방자치단체 : 관할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

2

세월호 선적 차량·화물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용자지원

- **(지원목적)** 세월호 선적차량·화물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피해복구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생계안정을 위해
- 긴급 경영자금을 중소기업 최대 10억원,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2.0%를 적용하여 5년간 용자 및 보증 지원하는 것임

□ **(신청기간)** 2014. 5. 19(월) ~ 2014. 8. 19(화)

※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

□ **(신청장소)**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

□ **(신청대상)** 세월호 선적 차량·화물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

□ **(지원내용)**

구분	지 원 내 용
자 금	(중소기업) 업체당 10억 이내, 2.0% 고정금리 , 2년 거치 3년 상환
	(소상공인) 업체당 7천만원 이내, 2.0% 고정금리 , 2년 거치 3년 상환
	(공통사항) 기존 대출자금의 원금 상환유예(1년 6월) 및 만기 연장(1년)
보 증	(중소기업) 업체당 5억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 , 수수료 0.1%)
	(소상공인)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 , 수수료 0.1%)

※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 미만, 기타 업종 5인 미만은 소상공인

□ **(구비서류)** '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'와 아래의 부속서류

- ① 선적의뢰서 등 세월호 차량·화물 선적 입증자료(신고인이 입증책임)
- ② 자동차등록원부,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

□ (지원절차)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을 발급
 -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을 지참하여
 - (중소기업)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·용자 지원
 - (소상공인) 보증기관 또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용자 지원
- * 담보가 없는 경우,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

□ (문의처)

- 중소기업청 : 비상안전담당관실 ☎ 042-481-6871
- 지방자치단체 : 관할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

3

생계형 화물차량 피해 사업자 용자 및 보증지원

□ (지원목적) 세월호 선적차량·화물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중 생계형 화물차량 피해사업자에 한하여

- 차량 피해 지원자금을 7천만원까지 금리 0.0%를 적용, 5년간 용자 지원하고
- 7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신·기보 특별보증을 통해 시중금리로 용자 지원(결정금리는 사업자 신용도 등에 따라 거래은행에서 평가)

□ (신청기간) 2014. 6. 16(월) ~ 2014. 8. 19(화)

※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

□ (신청장소)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

□ (신청대상) 세월호 선적 차량·화물 피해 사업자 중 생계형 화물 차량 피해 사업자*

※ 해양수산부에서 생계형 차량 피해 사업자로 확인한 사업자

□ (지원내용)

구분	지 원 내 용
자 금	업체당 7천만원 이내, 0.0% 고정금리 , 2년 거치 3년 상환 기존 대출자금의 원금 상환유예(1년 6월) 및 만기 연장(1년)
보 증	(신·기보) 업체당 5억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, 수수료 0.1%) (지역신보)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(100% 보증, 수수료 0.1%)

※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 미만, 기타 업종 5인 미만은 소상공인

□ (구비서류) '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'와 아래의 부속서류

- ① 영세 운수사업자 명단(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 받아 중소기업청에서 제공)
- ② 자동차등록원부,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

□ (지원절차)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을 발급
-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「재해중소기업 확인증」을 지참하여
 - 보증기관 또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용자 지원
 - * 담보가 없는 경우,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이용
 - 피해금액이 7천만원 초과시 7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용자 지원하고, 7천만원 초과금액은 신·기보 보증한도 만큼 시중은행에서 시중금리로 용자여부 결정하여 지원

□ (문의처)

- 중소기업청 : 비상안전담당관실 ☎ 042-481-6871
- 지방자치단체 : 관할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사무소)

- ※ 붙임 1.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신고서(중소기업·소상공인)
2. 인우보증서
 3. 재해확인증(서식)

【붙임 #1】

(앞쪽)

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(중소기업·소상공인)

1. 피해자 정보

주 소 지	시·도	시·군·구	길	(읍·면·동,)
성 명	(생년월일:)			
* 피해자와의 관계	피해자()의 [본인, 직계존비속, 배우자, 기타()]			

* 피해자와의 관계 : 세월호 인적피해자와의 가족관계 기술, 선박화물 피해자인 2. 지원신청자 정보만 기재

2. 지원신청자 정보

주 소 지	시·도	시·군·구	길	(읍·면·동)
사업장 소재지	시·도	시·군·구	길	(읍·면·동)
대표성명 / 업체명	/ (주민등록번호: -)			
연 락 처	전화번호:		휴대전화:	

3. 피해내용

* 피해자 및 가족은 2013년 매출액의 1/3을, 선적 차량과 화물피해업체는 그 피해금액

사업자 등록번호	-	-
직전년도 매출액	금	원
피해 금액	신 고	금 원 (영업피해 : 원, 차량·화물 : 원)
	확 정	금 원

* 첨부서류

1. (피해자·그 가족) ①사업자등록증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제적등본 등 사상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) ③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표준재무제표 증명, 표준재무제표 확인(세무사) 중 제출가능 서류 한가지 ④ 휴업 및 영업중단 확인서(통·반장, 이웃주민 등 2인 이상 인우보증)
2. (화물피해자 본인) ①사업자등록증 ②세월호 화물선적의뢰서 ③피해액 입증자료(매입자료 등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중소기업청에서 매출액, 영업결손액 판단 및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용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이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「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」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자 및 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,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출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14 년 월 일

신고인 :

(서명 또는 인)

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【붙임 3-1】

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

(세월호 탑승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중 중소기업·소상공인용)

업 체 명						대표자	
주 소						전 화 (FAX)	
주생산품						매출액	
피해금액 (천 원)	건축물	기계시설	완제품	원자재	기타	합계	
	◦ 용자 및 용자금액은 용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 ◦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, 유효기간 안에 용자(보증)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정책자금(소상 - 세월유가족 : SMM) 지원조건 : 금리 0.0%						

상기 사업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재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.

2014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읍장·면장·동장

○ ○ ○ (직 인)

【붙임 3-2】

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

(세월호 선적 차량 및 화물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용)

업 체 명						대표자	
주 소						전 화 (FAX)	
주생산품						매출액	
피해금액 (천 원)	건축물	기계시설	완제품	원자재	기타	합계	
	◦ 용자 및 용자금액은 용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 ◦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, 유효기간 안에 용자(보증)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정책자금(소상-특별세월호:SML) 지원조건 : 금리 2.0%						

상기 사업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재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.

2014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읍장·면장·동장

○ ○ ○ (직 인)

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

(생계형 화물 차량 피해 사업자용)

업 체 명			대표자			
주 소			전 화 (FAX)			
주생산품			매출액			
피해금액 (천 원)	건축물	기계시설	완제품	원자재	기타	합계
	<p>◦ 용자 및 용자금액은 용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</p> <p>◦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, 유효기간 안에 용자(보증)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정책자금(소상-세월유가족 : SMM) 지원조건 : 금리 0.0% (용자한도) 최대 7천만원 (보증한도) 신·기보 최대 5억, 지역신보 최대 7천만원</p>					

상기 사업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재해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.

2014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 읍장·면장·동장

○ ○ ○ (직인)